

의안번호	2208015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5.2.27.
추계번호	25C0728

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 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2,700만원(연평균 2,5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(제5조)	99	—	—	—	—	99	19.8
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(제6조)	5.6	5.6	5.6	5.6	5.6	28	5.6
합 계	104.6	5.6	5.6	5.6	5.6	127	25.4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제6조(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)	뇌전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 1. 국가뇌전증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.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. 뇌전증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. 뇌전증관리사업 예산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뇌전증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8조(뇌전증 연구사업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 및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뇌전증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“뇌전증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9조(뇌전증 등록통계사업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 사업(이하 “뇌전증등록통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0조(역학 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1조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환자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뇌전증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(뇌전증 지원센터의 설치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5조(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균등한 취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16조(의료비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뇌전증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7조(심리 상담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1	안 제18조(주간 활동·돌봄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12	안 제19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뇌전증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13	안 제20조(비용의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뇌전증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등)	○	-
2	안 제6조(국가뇌전증관리 위원회)	○	-
3	안 제8조(뇌전증연구사업)	X	·보건복지부는 2024년 “뇌전증 지원체계 구축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, 뇌전증 진단·치료 장비구입 등에 20억 4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¹⁾ - (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) 뇌전증 진단·수술 장비 지원, 도움전화 및 전문상담, 뇌전증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·교육, 뇌전증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등 개발·운영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- (뇌전증 진단·치료장비 지원)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 의 삶 개선을 위하여 종합병원에 뇌전증 정밀진단 장비 및 수술로봇 장비를 지원 ·보건복지부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하고, 「보건의료 기본법」 제44조 및 제45조 ²⁾ 에 따라 뇌전증 진단·치료 장비 도입, 연구·홍보·상담 등을 수행 - 뇌전증연구사업, 뇌전증등록통계사업,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경우 “뇌전증 지원체계 구축”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, 현행 예산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
4	안 제9조(뇌전증등록통계 사업)	X	
5	안 제10조(역학조사)	X	
6	안 제11조(실태조사)	X	
7	안 제13조(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)	X	

1) 뇌졸중,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, 약물난치성 중증뇌전증 치료 지원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43억원이 반영되었고,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예산이 편성됨

2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5조(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8	안 제15조(고용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9	안 제16조(의료비 지원)	X	
10	안 제17조(심리상담 지원)	X	
11	안 제18조(주간활동·돌봄 지원)	X	
12	안 제19조(문화·예술· 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	X	
13	안 제20조(비용의 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뇌전증연구사업(안 제8조), 뇌전증등록통계사업(안 제9조), 역학조사(안 제10조), 실태조사(안 제11조), 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13조)는 현재 관련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(안 제15조), 의료비 지원(안 제16조), 심리상담 지원(안 제17조), 주간활동·돌봄 지원(안 제18조),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(안 제19조), 비용의 지원(안 제20조)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
 - 지원 항목별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(안 제5조) 보건복지부가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9,900만원으로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”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에 9,900만원의 예산을 집행

- 2026년부터 5년마다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뇌전증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99	-	-	-	-	99

주: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□ (안 제6조)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³⁾를 설치·운영을 하는 경우 유사사례인 “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”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2,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- 본 추계에서는 해당 위원회 설치·운영에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가재정소요는 회의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의 수에 연간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수당을 곱하여 추계
 - (회의수당 지급 대상자 수) 유사사례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7명은 위촉 민간위원이므로, 본 추계에서도 민간위원을 7명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적용
 - (회의 개최 횟수)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회의 횟수는 연 4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3) 제7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
 2. 뇌전증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
 3. 그 밖에 뇌전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표 3]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(안 제6조)	5.6	5.6	5.6	5.6	5.6	28

주: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4. 추계 결과

- (일부 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2,700만원(연평균 2,5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(제5조)	99	—	—	—	—	99	19.8
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(제6조)	5.6	5.6	5.6	5.6	5.6	28	5.6
합 계	104.6	5.6	5.6	5.6	5.6	127	25.4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